

- 2026년도 그린파킹(Green Parking) 사업 -

보 조 금 지 원 안 내

그린파킹(Green Parking) 사업이란?

‘녹색주차마을 사업’이라고도 불리는 그린파킹(Green Parking)은 주택가의 차량소유주가 직접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, 방범 시설 등의 설치와 녹지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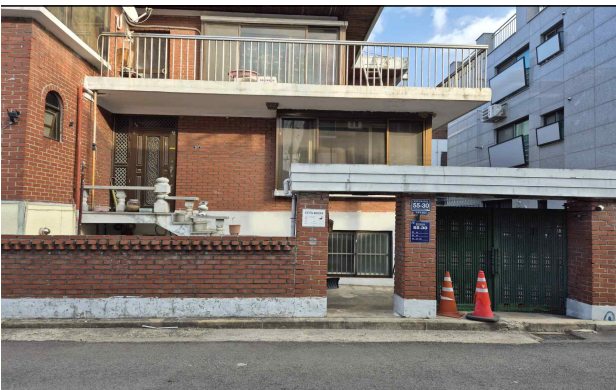
☐ 지원대상

-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설치 가능한 단독(다가구)주택, 다세대주택
- 법정 주차면 외 추가로 주차구획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사가 필요한 주택

☐ 지원내용 및 금액

구 분	지 원 내 용	지 원 금 액	비 고
개별주택 (단독, 연립, 다세대)	· 담장(대문) 철거 · 개방형(투시형) 담장 및 대문 · 주차면 조성 · 조경시설, 방범시설	· 1면 650만원 · 2면 750만원 · 3~10면 : 추가 1면당 100만원 범위 내 · 최대 1550만원	· 설치비(공사비) 100% · 당해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보조금 지급기준 따름

- 의무이행기간 :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 타 용도 사용, 철거 후 건물 신축 시 보조금 회수
[주차장 5년 이상 사용 이행각서 작성 후 미이행 시 지원 보조금 환수조치]



설 치 전



설 치 후

- ☐ 신청방법 : 서면 접수(등기), 방문신청 (문의: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☎453-2683)

☐ 추진절차

사업신청서 접수(신청자)
적합여부 검토 및 승인(남동구)



공사 시행
(신청자)



공사 완료 후
보조금 신청(신청자)



보조금 지급
(남동구)

- 2026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-

보 조 금 지 원 안 내

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란?

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건축물의 이용시간별 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개방할 경우 주차장 정비공사비의 일부 또는 운영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□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

지원대상	시설지원내용	지원금액
《시설개선비》 주차장 5면 이상, 3년 개방 가능한 건축물 (공공기관 제외)	·주차 노면표시 정비 - 주차구획, 안내 노면 표시 등 ·카스토퍼, CCTV, 출입구 차단시설 등 ·주차장개방 안내 표지판 ·부설주차장 개방관련 시설물설치 ·기타방법시설	○ 시설개선비(최초지원) ·설치비(공사비) 100% -5면 개방 시 : 750만원 지원 -5면 초과 시 : 초과면당 30만원 (최대 3,000만원) ○ 시설개선비(재개방) · 700만원
《운영보전금》 주차장 5면 이상, 2년 개방 가능한 건축물 (공공기관 제외)	-	·월 2만원/면 (최대 60면)

○ 기준개방시간 : 평일·토요일 19시~익일 7시, 일요일·공휴일 24시간

- 개방시간은 건축물 사용(또는 영업)시간 외 유휴시간에 따라 남동구청장(교통행정과)과 협의로 조정 가능

○ 의무개방기간 : 3년(시설개선비), 2년(운영보전금) 미이행 시 지원 보조금 환수 조치

□ 신청방법 : 서면 접수(등기), 방문신청 (문의: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☎453-2683)

□ 추진절차

사업신청서 접수(신청자)
적합여부 검토 및 승인(남동구)



공사 시행
(신청자)



공사 완료 후
보조금 신청(신청자)



보조금 지급
(남동구)

- 2026년도 아파트 주차장 추가설치 지원 사업 -

보 조 금 지 원 안 내

아파트 주차장 추가설치 지원 사업이란?

이면도로 및 아파트 주차난 해소와 주차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.12.17. 이전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로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, 아파트 내 주차장을 추가 설치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
- 지원대상 (①, ② 모두 충족하는 대상에 한함)

- ① 2013.12.17. 이전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- ②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, 조경시설,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면적의 4분의 3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

- 지원내용 : 주차장 포장 보수, 주차 노면표시 정비, Car Stopper 설치 등

- 지원금액 : 주차 1면당 최대 200만원

단지 당 최대 6,000만원까지 지원(인천시 보조금 지급 기준)

※ 제외대상 및 제외사항

- 도시개발사업(재개발)에 포함된 공동주택단지
- 지하주차장 내 빈공간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주차면 증설하는 사항

☐ 의무이행 기간(5년)

-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 타 용도 사용 시 지원 보조금 환수
- 주차장 설치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여 5년 이내에 주차장 폐쇄 시 보조금 환수

※ 주차장 5년 이상 사용 이행각서 작성 후 미 이행 시 지원 보조금 환수조치

☐ 신청방법 : 서면 접수(등기), 방문신청 (문의: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☎453-2683)

☐ 추진절차

- ① 신청서 접수 및 처리(교통행정과) ➡ ② 행위허가필증(공동주택과)
- ➡ ③ 부설주차장 확충공사 시행 ➡ ④ 검사필증(공동주택과)
- ➡ ⑤ 보조금지급 신청서 제출(교통행정과) ➡ ⑥ 지급결정통보(교통행정과)

- 2026년도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-

보 조 금 지 원 안 내

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이란?

원도심 내 주차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주차난 해소하고자 주차면 추가 설치 등 개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□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
- 지원대상 : 10면 이상 주차장 개방사업을 신청한 초·중·고·대학교, 공공기관(시·군·구 산하 제외)
- 지원내용 : 주차시설, 방범시설, 안전시설, 주차면 추가 설치 등
- 지원방식 : 자치구 직접공사 시행(용역 등)
- 지원금액

구분		최대 지원금액	비고
최초지원	10면 ~ 19면	100백만원	당해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보조금 지급기준 따름
	20면 ~ 39면	200백만원	
	40면 이상	300백만원	
재개방		20백만원	

□ 의무이행 기간(3년)

- 주차장 개방 협약기간 이내 타 용도 사용 시 지원 보조금 환수
- 10면 이상, 3년 개방(재개방 시 2년), 안내판 설치 의무

□ 신청방법 : 서면 접수(등기), 방문신청 (문의: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☎453-2683)

□ 추진절차

- 최초지원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① 신청서 접수 및 처리(교통행정과) | ➡ ② 협약체결(남동구↔공공기관) |
| ➡ ③ 부설주차장 공사 시행(자치구) | ➡ ④ 준공 후 개방 |